

1.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이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한편, 당직간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33조”를 “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33조”로 한다.

제49조제2항 본문 중 “교감”을 “교정관 또는 교감”으로 한다.

제71조 중 “분류급”을 “처우등급”으로 한다.

제77조의 제목 “(전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)”를 “(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염병”을 “감염병”으로 한다.

제80조제1항 중 “교도관용, 경비교도용”을 “교도관용”으로 한다.

제81조제1항 중 “전염병”을 “감염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2조(정의)	-----	
1. 2. (생략)		1. 2. (현행과 같음)		
3. 직업훈련교도관: 「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「 <u>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</u> 」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.		3. -----		

		----- 「 <u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</u> 」 제33조		

		-----.		
4. ~ 8. (생략)		4. ~ 8. (현행과 같음)		
제49조(당직간부의 편성) ① (생략)		제49조(당직간부의 편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당직간부는 <u>교감</u> 으로 임명한다. 다만,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당직간부에 임명할 수 있다.		② ----- <u>교정관 또는 교감</u>		
		-----.		

		-----.		
③ (생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
제71조(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)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의 <u>분류급</u> 변경 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		제71조(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) -----		

		-- <u>처우등급</u> -----		

다.	--.
제77조(<u>전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</u>) ① 의무관은 <u>전염병</u>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,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	제77조(<u>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</u>) ① ----- <u>감염병</u> 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0조(의약품의 관리) ① 약무직 교도관은 의약품을 <u>교도관용</u> , <u>경비교도용</u> , <u>수용자용</u>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	제80조(의약품의 관리) ① ----- ----- <u>교도관용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81조(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) ① 의무관은 의료과 및 의료수용동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에 대하여 <u>전염병</u> 예방이나 소독, 그 밖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	제81조(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) ① ----- ----- ----- <u>감염병</u> 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